

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(한지아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7246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3. 5.

발 의 자 : 한지아 · 김 건 · 김성원
고동진 · 박성훈 · 이상휘
백종헌 · 정성국 · 이현승
서명옥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령에 따라 전문심사기관은 보험회사등의 위탁을 받아 의료기관이 청구하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심사·조정할 수 있으며, 제공받은 자료와 청구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할 수 있음. 또한,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료기관에 출입하여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음.

그런데 현행 법령상 전문심사기관이 실시하는 현지확인은 단순 사실여부의 확인으로 서류 검사 등을 할 수 없는 제약이 있고,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 등은 인력 및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실효성이 낮다는 문제가 제기됨. 참고로 「국민건강보험법」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현지조사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해당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음.

또한 현행법은 검사·보고요구·질문에 불응하거나 이를 방해·기피한 경우를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, 유사한 행정조사 협조의무 위반을 규율하는 「국민건강보험법」과 비교할 때 제재 체계의 일관성과 합리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.

이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전문심사기관(건강보험심사평가원)이 국토교통부장관의 현지조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, 검사·보고요구·질문에 대한 협조의무 위반 행위를 과태료 부과 체계 내에서 명확히 재정비함으로써 의료기관의 불법·과잉 진료에 대한 관리·감독 기능을 강화하고, 유사 제도 간 규율 수준의 정합성과 행정조사의 실효성을 함께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43조 및 제48조).

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3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검사·질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심사기관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.

제48조제3항제3호의3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제39조의6을 위반하여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”을 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”으로 하며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제39조의6을 위반하여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
2. 제43조제1항에 따른 검사·보고요구·질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방해 또는 기피한 자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43조(검사·질문 등) ① ~ ④ (생략) <u><신설></u>	제43조(검사·질문 등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<u>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검사·질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심사기관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.</u>
제48조(과태료) ① . ② (생략)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1. ~ 3의2. (생략) <u>3의3. 제43조제1항에 따른 검사·보고요구·질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방해 또는 기피한 자</u> 4. (생략) ④ <u>제39조의6을 위반하여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</u> 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	제48조(과태료) ① .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-----. 1. ~ 3의2. (현행과 같음) <u><삭제></u> 4. (현행과 같음) ④ <u>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</u> ----- -----.

부과한다. <u><신 설></u> <u><신 설></u> ⑤ (생 략)	<u>1. 제39조의6을 위반하여 자동</u> <u>차손해배상진흥원 또는 이와</u> <u>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</u> <u>2. 제43조제1항에 따른 검사·</u> <u>보고요구·질문에 정당한 사</u> <u>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거나</u> <u>이를 방해 또는 기피한 자</u> ⑤ (현행과 같음)
---	--